중개사무소조사・검사증명서

1. 조사 • 검사자 인적사항

소속	직급	성명	비고

- 2. 조사·검사기간: 년 월 일 ~ 년 월 일
- 3. 대상지역:

위 사람은 「공인중개사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 시 • 도 지 사 시장•군수•구청장

직인

유의사항

- 1.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려는 공무원은 이 조사·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.
- 2. 개업공인중개사가 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「공인중개사법」 제3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업무정 지처분을 받게 됩니다.